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010-2944-7859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4706-7097

제 목 [보도자료]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혐의 고발,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7. 7. 11. (총 15 쪽)

보도자료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일시 장소 : 7. 11.(화) 13:3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기자회견,
14:00 서울중앙지검 앞 고발장 접수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11(화) 오후 2시 현재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구속수사 중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해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전현직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고발인은 가맹점협, 참여연대) 이에 앞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규탄하며,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행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밝히고 검찰수사를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해 개별 가맹점주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계약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는 본사의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본사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이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법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3. 이러한 와중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미스터피자의 경영진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도 모자라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미가협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벌여온 갑질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의 가맹점판이자 미스터피자 내의 창조컨설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파괴공작이 자행된 시점은 본사의 갑질에 따른 폐점위기에 놓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상생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218일간의 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협상을 타결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 불공정·갑질행태를 개선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맹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지난 **7월 3일** 정우현 전 회장의 검찰소환조사와 동시에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본사로부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한 점주가 양심선언을 통해 미스터피자 본사의 점주단체 회장선거 개입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의 최병민 대표이사과 정순태 고문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6/7**)를 앞두고 직접 자신의 매장에 찾아와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하지 않겠냐”며 “모든 지방점주 분들께 다 얘기를 해냈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 다가올 총회에서 이 점주가 회장을, 또 다른 특정 점주가 부회장을 하면 어떨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출마를 종용하였습니다.

이 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며 독촉하였고, 결국 이 점주가 참석하지 않은 6월 7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사가 부회장 후보로 제시했던 특정 점주가 적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히며 단 4표차로 회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저도 본사가 개입하여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에 저항하던 점주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본사와의 사전접촉 의심이 있는 점주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6일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해당점주의 양심선언과 또 다른 점주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새로 선출되었던 점주가 회장직에서 불신임되며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다른 가맹점주단체·프랜차이즈 영역에서 반드시 재발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5. 미스터피자 본사는 2007년 판촉행사비를 점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마케팅비 과다책정 및 광고비 미집행으로 분쟁조정신청 사건화 되었으며 , 2015년에는 마케팅비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으로 영업지속)를 강행하는 등 갑질을 행사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전 해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POS 재계약을 체결하고 치즈가격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경비원 갑질 폭행, 치즈가격 폭리 문제를 제기해온 점주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청구 위협, 가맹갱신 거절 통보 등 가맹점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점주들의 가게 옆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여 해당 점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비상직적인 갑질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6. 이러한 사태가 비단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사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갑질에 의한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7. 끝으로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행태에 대한 분노한 여러 시민들의 응원과 자발적인 시민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에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들께서도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 이 사건 고발장 원본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대신 아래 고발장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 붙임2 :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 ▣ 붙임3 :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사건 개요
- ▣ 붙임4 : 7/3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A 점주의 양심선언 녹취록
- ▣ 붙임5 : 미스터 피자 관련 언론보도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혐의 고발
및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 고발취지 설명 :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발언1. 이경민 피자연합 대구반야월점 점주
- 발언2.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발언3. 조덕근 르노삼성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 발언4. 최낙용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 발언5.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 연대발언.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마무리발언.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으로 이동, 간단한 고발취지 설명 및 발언 후 고발장 제출

○참가자 :

- 고발인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더풋삼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 붙임2 :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2.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피고발인

1. 정우현 MP그룹 전회장
2.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3. 정순태 MP그룹 고문

I.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범죄사실

피고발인 최병민은 미스터피자 운영사(가맹본부)인 주식회사 MP그룹 본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발인 정순태는 위 MP그룹 본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고발인들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맹점사업자)입니다.

피고발인은 2017. 6. 7. 개최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위 총회에서 실시할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A, B 점주 등을 만나 회장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권유하고, 다른 점주들로 하여금 피고발인이 회장으로 추천한 후보에 투표하도록 회유 또는 협박하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특정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일시불상경 미스터피자 운영사(가맹본부)인 주식회사 **MP**그룹 본사의 고문으로서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Ⅲ. 고발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이 사건의 경위

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개요

(해당 부분은 보도자료4의 사실관계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나. 정기총회와 회장 선출

(해당 부분은 보도자료4의 사실관계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다. 정기총회 이후의 상황

(해당 부분은 보도자료4의 사실관계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라. 비상총회 개최 및 후속조치

2017. 7. 4. 고발인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은 앞친데 뒤편격으로 발생한 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비상총회에 출석한 **A 00**점 점주는 아래와 같이 본사의 최병민 대표이사과 정순태 고문이 본사 측의 입장을 대변할 점주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로 내세울 점주들을 섭외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에 투표하도록 다른 점주들을 회유하였다는 내용의 중요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후략)

3.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업무방해 구성요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문언에 따르면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발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바, 이하에서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맹본부로서 위력을 행사

(중략)

최병민은 주식회사 **MP**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정순태는 위 그룹 본사의 고문으로서,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MP**그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회유·압박한 이상 위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합니다.

가) 최병민, 정순태는 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 한 가맹점사업자들을 물색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본사가 추천하는 회장 후보에 투표하도록 점포들을 돌아다니며 점주들을 회유·압박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최병민, 정순태는 미스터피자 00점 점주 **A**을 수차례 찾아가 회장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회유·압박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점주로 하여금 회장후보로 입후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2017. 6. 7. 정기총회에서 특정 점주가 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하였습니다.

3) 만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앞서 피고발인 최병민, 정순태 등 본사 소속 직원들이 가맹점사업자들을 회유 내지 압박하는 명백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주식회사 **MP**그룹이 위 제2. 가.항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갑질행위’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점포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MP**그룹은 아래와 같이 미가협 주요 활동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보복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어 보복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극심한 보복성 갑질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

(중략)

2) 미가협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그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 가맹본부는 미가협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5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3) 가맹점사업자단체인 미가협이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는 데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MP그룹 본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최병민, 고문인 피고발인 정순태가 개입하여 본사가 입후보 시킨 후보를 당선시킨 이상, 미가협의 공정한 선거관리의 업무가 위 피고발인 최병민, 정순태의 위력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IV. 결론

가맹사업에 있어서 영원히 ‘을’일 수밖에 없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에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라는 무기로 가맹점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치즈통행세 부과, 불공정 약관 거래, 광고·판촉비 전가 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생계유지 수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였고,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법률로써 보호받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쟁과 협상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유일한 가능성을 가맹본부가 짓밟은 사안입니다. 가맹본부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면,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였는데, 이제는 단체의 구성행위까지 개입하여 그 존재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가맹본부를 향하고, 갑질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 시점에도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MP그룹의 경영진들은 겉으로는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불공정한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공정한 거래 생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2017. 7. 11.

고 발 인

▣ 붙임3 :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사건 개요

20160906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 총회에서 농성찬반투표 가결, 갑질로 폐점한 가맹점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및 상생협약 파기 규탄 본사 앞 무기한 농성선포 기자회견

201610초 본사, L 미가협 전임 회장에게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20161014 본사와 미가협 간 미집행 광고비 문제, 치즈 등 식자재 가격 인하 협의 진행
본사, K 미가협 회장에게 가맹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 발송

20161027 본사, K 회장에게 2차 갱신거절 내용증명 발송, 농성중단 및 민사상 손해청구

20161210 미스터피자 U지역 S점주 본사 임원진 미팅 후 심장마비로 사망

20161220 검찰, L 전임 회장에 대한 본사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20170227 본사의 항고청구 기간)

20170120 본사, L 전임 회장 등의 피자연합 점포인 D지역 인근에 직영점 보복출점

20170219 본사, 피자연합 점포 I 지점 앞에 직영점 보복출점

20170313 L 전임 회장 사망

20170329 본사, 미가협 비대위 공동대표 P에게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보

20170411 서울시 중재로 본사와 협상타결 - 농성 218일째

201705경 미스터피자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A점주 매장 방문, A점주에게 회장출마 권유 및 본사의 선거지원 제안 (본사의 제안 : A점주 회장, B점주 부회장)

20170607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 (A점주 불참)

- 점주단체 회장선서 : 340여개 가맹점 중 79명 참석, 가맹점주 투표 진행

- 투표 끝에 B 점주 41표, C점주 37표, 기권 1표로 B점주가 회장으로 당선

20170622 검찰,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20170627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대국민사과 및 회장직 사퇴

20170703 정우현 전 회장 검찰소환조사, 미가협 비상총회 개최

- 점주 A씨의 양심선언으로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본사의 미가협 회장선거 개입의혹 폭로

2017071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 붙임4 : 7/3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A 점주의 양심선언 녹취록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A씨 :

()는 녹취록 정리과정에서 붙인 설명

개인적으로 저는 미피(미스터피자)를 10년 넘게 하면서 들리는 얘기들은 너무 우리가 많이 속았어요. 지금까지 속고, 속고 또 속고, 희망을 갖고, 갖고 그쵸. 근데 우리가 가지려 하였던 건 뭐냐면 절망, 폐업 아주 그 생각하기 싫은 내용들만 위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러) 왜 나왔냐 하면 어, 총회 회장을 뽑기 전에 저희 매장에 정 고문(미스터피자 정순태 고문)님 하고 또 몇 분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미가협(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전에 지역대표를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제게 어떤 제의를 했었냐면 이번 총회 때 회장 하면 어떨겠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제가 무슨 회장을 합니까.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물론 미피에 애착이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해서) 저는 (회장 출마)생각을 안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회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그러고 나서 오시기만 하면 제가 모든 지방 점주들께 다 얘기 해놔었고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00회장님(6/7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도 일반 점주입니다. 지금 두 분이 아, 잠깐 그 얘기를 말씀 드릴게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총회 이틀인가 삼일 앞두고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보고 제가 정고문님 말씀대로 한다 한들 할 수가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빨리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 대충 초안은 제가 회장, 00회장님이 부회장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전 고문님이 미피를 어떻게 살려 볼려고 노력하시는건 알겠지만 이건 방법이 아닌거 같은 거예요. 왜, 미가협도 결국 못살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00회장님이 아까 찢찢 매는 이유를 원지 아시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위에서 너무 많이...(녹음 상태 불량으로 중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겪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총회에 있었던 그런 분란들이 저는 제가 못났었고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리더는 망가져있어요. 미피를 대표하는 정 회장님(정우현 전 회장)은 망가져 있었어요. 또 우리 미가협 그 뒤를 이어서 준비 해야 되는데 이 출생이 시작조차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갔다가는 누구의 사주를 받겠습니까? 누구의 의견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 많은 점주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참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의견을 다받아서 정 고문님(정순태 고문)한테 필터링 할
거라고요. 이걸 아니다. 이걸 미가협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후략)

▣ 붙임5 : 미스터 피자 관련 언론보도

1. [미스터피자, 또 다시 논란...가맹점주 "상생협약 어디갔나"](#), 2016. 3. 15. 뉴시스
2. [\[단독/窺\]어느 피자 가게 주인의 죽음](#), 2017. 3. 22. 동아일보
3. [가맹점에 갑질 논란...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2017. 6.21. 서울경제
4. [\[정리뉴스\]경비원 폭행·가맹점주들과 갈등...미스터피자 '갑질의 역사'](#), 2017. 6. 26. 경향신문
5. ['갑질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회장직 사퇴](#), 2017. 6. 26. 세계일보
6. [“정우현 속죄하라”...미스터피자가맹점주 110명 본사 집회](#), 2017.8.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2017. 7. 7. KBS 7. 3. 헤럴드경제
7. [검찰,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2017. 7. 4. 한겨레
뉴스
9. [미스터피자 정우현, 개인 가게 인건비도 회사에 떠넘겨](#), 2017. 7. 7. 파이낸셜뉴스
10. [공정위, 미스터피자 회장 고발](#), 2017. 7. 10. 국민일보